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차별사례

2004. 12

K O T R A

목 차

I . 최근 세계 각국의 FTA 동향1

- 1. 세계 FTA 추진동향 / 1
- 2. 주요국의 FTA 정책 및 동향 / 5

II .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차별사례41

- 1. 개요/41
- 2.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차별사례 현황/ 47
 - 가. FTA 역내외 관세차별로 인한 피해사례/47
 - 나. 정부발주 입찰 프로젝트에서의 제한/59
 - 다. 기술규격인증 애로/61
 - 라. 기타/64

III . 시사점70

I. 최근 세계 각국의 FT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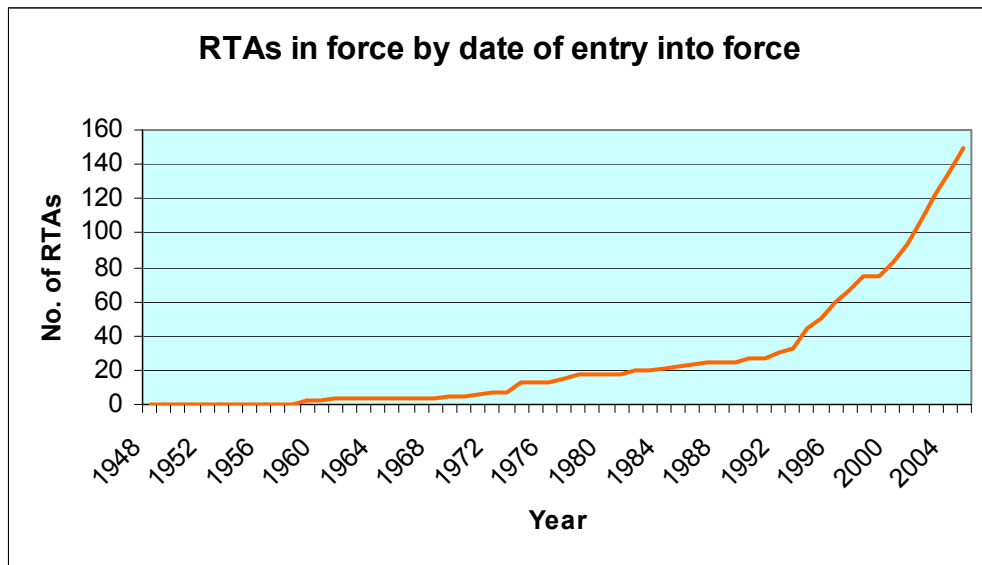
1. 세계 FTA 추진 동향

-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록화는 심화되는 추세
 - EU, '04년 5월 중·동구 10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25개 회원국이 됨
 - FTAA, 2005년 타결 목표로 협상중이며 타결시 미주대륙을 아우르는 34개 회원국의 거대 블록 탄생
 - 한편,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 FTA 체결 추진 자세로 전환
 - DDA 협상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FTA가 WTO 주도의 다자간 협상에 비해 단시간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달성수단으로 인식
 - 세계적 FTA 확산에 따라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 확산 등이 요인
- 2004년 11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50개이며 이미 협상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을 고려하면 총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

NOTIFICATIONS OF RTAs IN FORCE TO GATT/WTO			
	Accessions	New RTAs	Total
GATT Art. XXIV (FTA)	4	90	94
GATT Art. XXIV (CU)	5	6	11
Enabling Clause	0	19	19
GATS Art. V	2	24	26
Total	11	139	150

(자료원 : WTO)

- 1948년부터 상품무역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이 GATT에 통보되었으며,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에는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함



(자료원: WTO)

- 경제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 유럽 · 동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중

< 주요 국가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2004년 10월 기준 >

EFTA	칠레	멕시코	EU	싱가폴	미국	태국
42개국	41	42	35	18	17	15

* 중국(2개국), 일본(3), 한국(2)

- 상기 표에서 보듯이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EU,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10개 이상의 국가와 체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 특히, 그간 FTA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FTA 논의가 활발히 전개

- 북미 :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NAFTA 출범이후 현재 '05년 출범을 목표로 쿠바를 제외한 전 미주대륙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체결 추진중
- EU : 멕시코·칠레·모로코 등과 양자간 FTA 체결, '04년 5월부터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됨
- AFTA(ASEAN 자유무역지대) : 선발6개국은 2010년, 후발4개국은 2015년까지 AFTA를 완료, 선발6개국은 '02년부터 42,000여개 품목(총 교역품목의 96%)의 관세를 5%이하로 인하
- 日本 : '02년 싱가포르, '04년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후 아세안·한국과 추진중(한국, ASEAN과의 FTA추진에 주력)
- 中國 : ASEAN과 '05년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행하여 2010년까지 모든 공산품 관세철폐에 합의, 대만·태국과의 FTA 추진도 검토중

□ 이에 따라 세계적인 FTA 체결추세로부터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2003년 기준으로 주요 지역무역협정(EU, NAFTA, ASEAN, MERCOSUR, CEFTA, ANDEAN)의 역내 수출총액은 세계 전체 수출의 35.6%를 차지(자료원 : WTO)

※ EU 15개국(2003년)으로 산정, EFTA등 기타 FTA 미포함

- FTA협상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서비스분야 등도 FTA에 포함되는 추세로 FTA 미체결국에게 직접적 불이익 초래

□ 대외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가 유일

- 현재 일본과 '0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이며, 내년부터 아세안,

EFTA,멕시코와는 협상 개시 예정

○ 인도, MERCOSUR, 캐나다(검토중)와는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전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2 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때

□ 따라서 I, II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을 짚어보고 세계 주요 FTA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차별 받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국의 FTA 정책 및 추진동향

가. 미주지역

1) 미 국

가) 미국의 FTA 정책

- 기존의 다자간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지역간, 또는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통상이익의 극대화 및 전략적, 외교적 목적 달성 추구
- '03 칸쿤 WTO협상의 결렬, '05년 출범 예정인 FTAA 추진의 난항 등은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을 가속화시킴

미국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이스라엘('85),NAFTA('94), 요르단('01), 칠레('04), 싱가폴('04),호주('05발효), CAFTA('05.1발효예정),예멘, 오만(TIFA체결),모로코('04.6), 바레인('04.5), 도미니카공화국(인준만남음)	태국, SACU, FTAA, 안데안국가연합	파나마, 대만, 아세안, 한국, 일본 등

- * CAFTA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 SACU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 * FTAA :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 전체 34개국
- * 안데안국가연합(ANCOM: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중남미국가들과는 FTAA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국가들은 시장접근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통해 지역적인 안정을 지원, 호주·싱가폴 등은 자국의 수출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각 FTA 추진중

나) 미국의 국가별 FTA 추진 동향

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94년 1월 1일 발효하여 10년째를 맞이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나타남.
-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수입량의 28.8% 점유
 - 멕시코 수출의 89%가 대미 수출임
 - 캐나다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HTS 87의 자동차 및 부품
 - 멕시코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HTS 85의 전자제품
- NAFTA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교
 - 캐나다의 경우 FTA 발효기간 중 대미 수출증가율이 한국보다 낮으나 멕시코는 두 배 이상 증가했음

NAFTA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단위: 백만불)

	1993년	2003년	증가율
캐나다 대미 수출	110,921	224,166	102%
멕시코 대미 수출	39,930	138,073	245.7%
한국 대미 수출	17,123	36,963	116%
미국의 수입	580,469	1,259,396	117%

자료원: Export USA, Trade and Economy: Data and Analysis

②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s)

-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 전체 34개국의 인구 8억명, GDP 13조불, 수입 규모 4,000억불의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 현재 미국과 브라질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2005년 내 타결 및 발효는 미지수
- 미국은 FTAA 출범에 앞서 중남미 주요 국가 혹은 경제블록과의 선별적인 개별 FTA체결에 노력중

③ 중남미지역

□ 미-칠레 FTA ('04년 1월 1일 발효)

- 미국이 남미국가와 체결한 첫 FTA로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비롯한 금융,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및 노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 칠레는 미국산 품목 중 87%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8년 이후에는 95%, 12년 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미국은 칠레산 공산품 중 85%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농산품은 4년 이내 75%), 나머지 품목은 10년 이내(농산품은 12년 이내) 관세철폐

칠레 대미 수출 비교 (단위: 백만불)

	2003 1-7	2004 1-7	증가율
칠레 대미 수출	330	537	62.8%
한국 대미 수출	20,690	25,524	23.4%
미국의 수입액	709,303	814,212	14.8%

자료원: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eb Data Service

- 수출 규모는 미미 하지만 동기간 중 수출 증가율은 한국에 비해 3배를 상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관찰 필요

□ 미-안데안 FTA

- 미국은 안데안 국가들(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중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와 '04년 5월말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로 6월까지 3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05년 2월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

- 볼리비아는 미국-안데안 국가와의 FTA에 옵저버로 참석했으나 '04년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음.

□ 미-중미 FTA (CAFTA)

- 미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등 중미 5개국과 '04년 5월 28일 서명(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미국과 도미니카간의 FTA가 CAFTA에 첨가되어(2004.8) 의회의 인준 절차가 남음. '05.1 발효될 경우, 미주지역에서는 NAFTA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규모 지역협정 탄생
 - 참고로 도미니카는 1998년에 카리브공동체(CARICOM)과 중미 공동시장(CACM)과도 FTA를 체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④ 중동지역

- 세계 최대 에너지 보고이자 대미 테러의 온상인 중동을 미국에 우호적이고 의존적인 경제체제로 전환, EU와 중국세력 확대 견제 목적

□ 미-이스라엘 FTA

- '85년 9월 발효한 미국의 첫 번째 FTA로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체결

대미 수출 비교

(단위 : 백만불)

	1985년	2003년	증가율
이스라엘 대미 수출	2,123	12,770	501%
우리나라 대미 수출	10,013	36,963	269%
미국의 총수입액	345,276	1,259,396	265%

자료원: Export USA, Trade and Economy: Data and Analysis

- 동 FTA 발효 기간 중 이스라엘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보다 두 배 가량 증가
- 단, 이스라엘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의 경우 한국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미-요르단 FTA ('01년 12월 17일 발효)

- FTA 발효 이후로 요르단은 대미 수출규모가 두 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경우, 5.05% 증가
- 단, 요르단의 경우 FTA 체결 이전부터도 매우 급격한 대미 수출신장세를 보였음(99-03년간 연평균 115% 성장)

요르단 대미 수출 비교 (단위: 백만불)

	2001년	2003년	증가율
요르단 대미 수출	229	673	194%
한국 대미 수출	35,185	36,963	5.05%
미국의 수입	1,141,959	1,259,396	10.2%

자료원: Export USA, Trade and Economy: Data and Analysis

□ 미-오만 FTA

- '04년 7월, GCC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오만과 무역 및 투자 협정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 미국은 중동 전역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맺기 위해 노력중이며, 오만과의 이번 TIFA체결은 FTA 체결을 위한 예비조치라고 볼 수 있음(미국은 이미 바레인과 FTA체결, 예멘과 GCC회원국과는 TIFA 체결)

⑤ 아시아·대양주 지역

□ 미-싱가폴 FTA ('04년 1월 1일 발효)

-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로서 아시아 지역 진출에 교두보 역할 기대
- 싱가포르 모든 미국산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즉시 관세 철폐
- 미국은 싱가포르 수입품의 92%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나머지는 8년 이내 철폐

싱가포르 대미 수출 비교 (단위: 백만불)

	2003 1-7	2004 1-7	증가율
싱가포르 대미 수출	8,518	8,473	-0.5%
한국 대미 수출	20,690	25,524	23.4%
미국의 총수입	709,303	814,212	14.8%

자료원: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eb Data Service

□ 미-태국 FTA

- '04.6.28 협상 개시되었으며 양국은 2005년까지 협상 완료를 기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폭넓은 무역관계를 맺으려는 부시의 의도
-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의 서비스, 농산품 등 미국 수출업체는 실질적 기회를 기대. 한편, 태국의 정치계, 농업계 및 NGO 대표들은 FTA로 인한 피해를 우려

□ 미-호주 FTA ('04년 8월 공식서명. '05년 발효예정)

-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은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
- 미국의 대호주 공산품 수출 연간 20억불 증가 예상, 7억불 수준의 미국의 대호주 농업 수출도 증가 전망
- 호주에 수출되는 미국 공산품의 99%가 관세면제 혹은 낮아짐. 호주의 경우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품의 97%가 같은 혜택
- 우리나라산 자동차와 타이어 및 자동차부품, 가전제품의 대호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산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관세부문으로서, 특히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 석유화학 제품, 지제품, 철강제품, 합섬직물, 일부를 제외한 전기전자 제품류가 주요 대상으로 지목됨
- 자동차 : 대미 가격경쟁력 상실폭이 2005년에는 2%, 2009년에는 8.5%가 악화

호주의 자동차 수입관세율 대비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후
대미(FTA)	15	8	6.5	5	3	1.5	0	0
대한(일반)	15	10	10	10	10	10	5	5
격차(%)	0	2	3.5	5	7	8.5	5	5

* 대미 관세인하는 FTA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산 관세인하는 WTO협약에 근거한 것임

- 석유화학제품, 타이어, 지제품, 합섬직물, 철강금속제품과 일부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 : 대미 가격경쟁력 상실폭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 발생하게 됨

⑥ 미국-모로코 FTA

- 2003. 1월 협상 개시, 2004년 3월 협상 타결. 2004.7.21 양국간 FTA 비준안 통과됨
- 양국의 FTA가 발효되면 전체품목 중 95%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이며 나머지 품목은 9년 이내에 인하, 철폐될 것임. 현재 미국과 모로코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4%와 20%임
- 미국은 항공기, 옥수수, 기계 등의 품목에서 6천6백만불의 대모로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억6천만불인 양국 교역규모는 FTA 발효로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2) 캐나다

가) 캐나다의 FTA 정책

-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중시하는 통상 정책을 고수해왔으나, 미국, 멕시코등과 NAFTA를 체결한 이후에는 세계적 FTA 조류에 부응,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자국무역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나) 캐나다의 국가별 추진 동향

- 1994년 미국,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한데 이어, 1997년에는 칠레 및 이스라엘과 2001년에는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
 - 현재는 FTAA, EFTA, 싱가포르 및 중남미 4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의 체결 가능성 검토 중
-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FTA 추진을 위한 예비회의를 '05년 상반기에 2회 개최하고, 중반기부터는 협상을 개시하여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함
 - 협상 타결시 우리나라는 타이어, 자동차 품목의 대 캐나다 수출 증가, 농수산물 및 광산물(펄프)의 대 캐나다 수입 증가 예상

캐나다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구분	국가	비고
기체결	NAFTA(94) (북미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97)	
	이스라엘(97)	
	코스타리카(01)	

협상중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2005년 발족될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로 총인구 8억명(세계인구 15%), GDP규모가 13조US\$에 달해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부상할 예정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중남미 4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나카라과
검토중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EU	
	안데안 공동 시장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한국	'05년내 협상 착수 및 타결 목표

(자료원) KOTRA 보고서, 한-캐나다 FTA 체결시 영향 및 시사점

3) 멕시코

가) 멕시코의 FTA 정책

- 멕시코는 42개국과 FTA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며 통상정책을 FTA에 집중
- 그러나 '03.11 일본, FTAA 등 협상중인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와는 FTA 추진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FTA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로 신규 FTA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04.10.25-26)됨

나) 멕시코의 국가별 FTA 추진 동향

- '92년 칠레와 FTA의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미주대륙 국가는 물론이고 EU, 이스라엘 등 총 42개국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최근에

는 일본, 싱가포르 등 대륙을 넘어선 아시아 국가와의 FTA 협상 논의가 줄을 잇고 있음

-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2개월 주기로 '05년까지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후 '05년 내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지역무역협정형태	설립 년도	참가국	주요내용
NAFTA	94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자본이동자유화,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보완협정, 분쟁처리기구설치
G3 자유무역권	95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02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완성 목표
멕시코-볼리비아 FTA	95	멕시코, 볼리비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상품 자유 이동, 투자 무차별대우 등)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95	멕시코, 코스타리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상동)
멕시코-이스라엘 FTA	00	멕시코, 이스라엘	'05년까지 공산품 관세철폐
멕시코-칠레 FTA	98	멕시코, 칠레	'92년 경제보완협정을 자유무 역협정으로 확대
멕시코-니카라과 FTA	98	멕시코, 니카라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시장접근, 투자, 원산지규정 등)
멕시코-중미 3국 FTA	00	엘살바도르, 온 두라스, 과테말 라, 멕시코	'12년까지 공산품, '13년까지 공 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멕시코-EU FTA	00	EU + 멕시코	'00년 7월 발효, '07년까지 총무 역의 96%까지 자유화추진계획
멕시코-우루과이 FTA	03	멕시코, 우루과이	'03.11 서명, '04.7 발효됨. 다른 MERCOSUR 회원국과의 협상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멕시코-일본 FTA	04	멕시코, 일본	'05.4월부터 발효 예정

(자료원) KOTRA 멕시코 무역관

4) 칠 레

가) 칠레의 FTA 정책 및 추진 동향

- 협소한 국내 시장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70년대 중반부터 국내 시장 개방정책 추진
 - 양자간 FTA는 90년대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 미주지역, 유럽 등 41개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 체결
 -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타 아시아 지역과도 FTA 적극 추진중
- 우리나라와는 '04. 4월 FTA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첫 FTA로서 의미가 큼
 -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의 양국간 교역은 한국 공산품의 대 칠레 수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칠레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크지 않음

칠레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캐나다('97), 멕시코('97), MERCOSUR('96), 볼리비아('98), 베네수엘라('97), 콜롬비아('98), 에콰도르('98), 페루('98), EU('96), 미국('02), EFTA('03), 한국('04)	바레인, 호주, 싱가포르-뉴질랜드(P3)	중국(협상개시 예정), 일본, 인도

5) 기타 중남미

가) MERCOSUR

- '91년 출범한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하고 칠레와 볼리비아는 준회원국으로 참여
- 브라질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와 함께 MERCOSUR를 이끔. 지역 경제권과의 FTA는 실리적 측면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으며 전략국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접근
- Mercosur와는 '04. 11월 노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시 양국간 FTA에 대한 양측의 논의가 있었으며 '05년 부터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 예정

MERCOSUR의 FTA 추진동향

구분	협정내용	발효시기
기체결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1.11.29
	MERCOSUR-칠레 준회원국협정	1996.10.1
	MERCOSUR-볼리비아 준회원국협정	1997.2.28
	MERCOSUR-페루 준회원국 협정	2003.8.25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	2003.5.2
	MERCOSUR-안데안 FTA	2004.10
협상중	MERCOSUR-EU FTA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MERCOSUR-인도 FTA	
	MERCOSUR-남아공 FTA	
추진중	MERCOSUR-중국 특혜관세협정	
	MERCOSUR-러시아 FTA	
	MERCOSUR-한국 FTA	'05년 공동연구 개시예정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① MERCOSUR-안데안국가연합 FTA

- '04.10.18 최종협상, 12월에 공식 서명 예정
 - 양측의 협상은 '96년에 시작되었으나 해당지역의 경제난으로 난항을 겪음
 - 이번 FTA로 양 지역은 세계 5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고 FTAA

의 초석이 된다는데 의미

- FTA 발효시 최장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현재 양 지역의 총 교역규모는 3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FTA 발효 후 4년 후에는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

나. 아시아·대양주 지역

1) 일 본

가) 일본의 FTA 정책

- 일본은 최근 아시아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체결에 적극적임
- FTA 협상에서도 취약 산업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관점에서 상대방 국가에 무엇을 팔 것인가 하는 공세적인 관점으로 기본전략을 변경

일본의 국가별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싱가폴('02), 멕시코('04), 필리핀('06년 발효예정)	한국('05년내 타결 목표), 태국, 말레이시아,	ASEAN,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등

나) 일본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싱가포르('02.11), 멕시코('05.4 발효예정)와 FTA 체결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05), ASEAN('12) 교섭 타결 목표로 교섭 중 또는 교섭 개시를 합의
- 일본과는 '04.11월 6차 협상을 실시하였으며 '05년도 3월부터 7차

협상을 개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 일본과는 양허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05년 초까지 일정 기간을 가진 후 협상 계속 추진 예정

① 일-필리핀 FTA

- '04년 11월 29일 일·필리핀 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현재 협상 중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과의 향후 전개도 가속화될 전망
-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에 대한 저관세 범위 설정 △간호사·간병인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의 조건을 설정한 노동시장 개방 △필리핀은 일본에 대하여 투자관련 최혜국대우를 부여 △철강에 대하여 대일 수입량의 60% 이상을 관세철폐 △자동차·동 부품에 대하여 일부품목의 관세철폐, 2010년까지 완전철폐 등의 합의사항이 포함됨.
- 다만, 간호사·간병인에 대한 수용인원규모와 광공업품에 대한 10년 이내 완전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양국간 합의가 보류됨에 따라, 향후 조정 작업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양국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협정문을 작성한 이후, 2006년 중에 발효할 방침임.

② 일-말레이시아 FTA

- '04년 9월, 제 5차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양국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없이 결렬됨
- 말레이시아 측은 합관 및 기타 자국산 품목에 대한 일본의 관세철폐를 희망하고, 일본은 공산품과 자동차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관세철폐를 요구했으나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③ 일-멕 FTA('05.4월 발효예정)

- 일본은 멕시코가 두 번째 FTA체결국이며 초 민감품목인 농산품이 포함된 첫 포괄적 협정이라는데 의미
- 일-멕 FTA 체결로 인한 영향
 - 금번 일-멕 FTA체결이 단기적으로는 멕시코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가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않을 전망
 - 그러나 일-멕간 관세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5-10년 후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변화를 예측할 때, 안정적인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조속한 한-멕 FTA 체결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음
 - 고급 전자제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④ 일-칠레 FTA

- 양국간 FTA 타당성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04.11). '05년 초부터 1차 공동연구 실시 예정

3) 중 국

가) 중국의 FTA 정책

-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WTO 가입 및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었고 FTA 등 지역주의에 대해선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 추진

중국의 국가별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홍콩('03.6), 마카오('03.10),	ASEAN	한국, 인도, 호주, 한중일, GCC, 칠레, 일본, 남아공 (협상개시예정) 등

나) 중국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①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홍콩('03.6), 마카오('03.10)와 기 체결
 -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부문으로 구성
 - 특정지역과의 영관세율제도로 FTA의 전단계로 볼 수 있음
- '04년 1월 1일 발효된 1차 품목에는 273의 품목으로 대부분이 원자재임
- '06년 1월1일 이전까지 2차로 273개 품목에 추가 영관세율 적용에 합의. 2차 품목에는 가전, 전자, 기계 등의 완제품이 다량 포함될 것으로 보여 반향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② 중-ASEAN FTA

- 중국,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은 한·중·일 FTA 쪽이 훨씬 크지만 단기간 내 성사가 어려워 우선, 여건이 수월한 아세안과 먼저 추진해 이니셔티브를 잡자는 의도
 -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및 투자협력 관계가 심화된 상태인데다 아세안은 화상 경제권지역으로 분류돼 이질성이 크지 않음.
- 2005년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행하여 2010년까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는 일본, 대만, 미국, 등이며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위협하는 상대가 아니나, 아세안 시장에서는 중국 상품이 한국 상품을 보다 크게 위협할 수 있음.
- FTA 타결시 약 18억명의 소비자를 지닌 세계 최대규모의 거대 경제블록권 탄생전망
 - 인구 18억, GDP 2조 달러의 단일 경제공동체 설립은 아세안의 농산물과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자동차, 냉장고, 컴퓨터 등 중국의 각종 제품이 동남아에 쇄도하는 결과 예상
 - 양측 교역규모 급속히 증가 추세. 지난해 아세안은 중국에 전년보다 51.7% 늘어난 473억불 수출, 31.2% 늘어난 309억불 수입, 교역규모는 사상최대인 782억불 기록. '04년 1-7월까지 아세안은 중국에 345억불 수출, 222억불 수입,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7%, 34.1% 증가.

③ 중국-GCC FTA

- 경제개발이 한창인 중국 외교의 화두는 '에너지 확보'로 요약됨. 원유 산유국인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걸프경제통합기구와 FTA추진에 나섬. '04년 7월 초 협상 착수에 합의.
- 양국간 교역규모는 '91년 15억불에서 '03년 169억불로 급증. GCC는 중국의 대 8위 교역그룹으로 부상.
- 중국-GCC FTA발효시 향후 중동 지역 내 우리나라의 입지가 크게 우려됨. 우리나라 공산품 중저가 품목 수출에 큰 타격 우려.
- 건설업은 이미 가격경쟁에서 중국에 뒤져 토목건축 시공사업의 수주에서 밀리고 있으며 플랜트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경쟁 우려. 양측 FTA 타결로 중동 원유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경우 우리의 안정적 원유확보에도 차질 우려.

④ 중국-칠레 FTA

- 공동연구 '04년 중 마무리하고 FTA협상을 개시하여 '05년 말 타결 예정.
- 양국간 FTA로 2008년까지 무역량 100억불 초과 예상

⑤ 중국-인도 FTA

- 중국, 인도와 FTA 체결희망. 올해 초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회 2 차례 가짐.
- 인도는 섬유부문 산업협력 희망, 중국은 인도에서의 중국사업가가 차별받지 않고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기대. 중국은 인도의 제 1위의 교역국, 올 해 양국 교역액 100억불 추산됨.

⑥ 중국-일본 FTA

-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 중국정부산하기관과 일본 JETRO는 중-일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양국은 '05년 말까지 공동연구 완료 계획
- 양국간 '04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600억불, '05년에는 2000억불 전망.

⑦ 중국-남아공 FTA

- 중국과 남아공은 공식 성명을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 발표.
- 2001년에 설립된 양국 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쌍방 교역 협력 개발 모색을 제의했으며 양국간 FTA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0년의 14억 7천불에서 2003년의 37억불로 증가했으며 2004년 1/4분기 교역액이 16억 7천불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66.6%의 증가율을 기록함

⑧ 중국-호주 FTA

- '05.3-4월까지 FTA를 위한 공동연구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조만간 FTA 협상 개시 전망
- 중국은 호주의 3위 상품 교역국이자 수출시장 및 수입국. 작년 쌍방 교역규모는 230억 호주달러를 넘음.
- 호주에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도 호주를 급격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및 원자재의 공급처로 인식

3) ASEAN

가) ASEAN의 FTA 정책

- 내부적으로는 AFTA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의 허브를 겨냥한 FTA 적극 추진
- 아세안이 아시아의 3강인 한중일과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에게 아세안국가들이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초조감 때문. WTO협상 부진도 한 요인

ASEAN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AFTA('92)	중국	한국('05년초 개시예정), 일본, 인도, EU, 호주 뉴질랜드

나) ASEAN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① AFTA

- '92년 아세안 6개국간 FTA를 체결. '95-'99년 까지 후발 4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10개국으로 늘어남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 총인구는 5억명으로 전세계인구의 17%, 총경제규모는 7000억불, 아세안-일본은 2003년 1080억불 이상의 교역량, 중국과는 지난해에만 40%증가해 780억불

② 일본-아세안 FTA

- 내년 4월 협상 개시, 2년 내 합의 목표
- 현재, 일본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개별적으로 FTA 협상중임.

③ 뉴질랜드, 호주 - 아세안 FTA

- 내년 초 협상 개시, 2007년까지 체결 희망

④ 인도-아세안 FTA

- '02.11 인도-아세안 정상회담에서 FTA추진발표. '11년까지 FTA 설립 합의

⑤ 한-아세안 FTA

- 한국과 아세안은 '04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05년 2월부터 2개월 주기로 협상 개시 예정
- 아세안은 우리의 5대 교역국으로 전체교역의 10%를 차지. 우리

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장

- 아세안 시장은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교역 구조로 FTA 체결 시 상당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태 국

가) 태국의 FTA 정책

- 탁신수상이 이끄는 현 태국 정부는 FTA 추진을 대외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과거 AFTA 중심에서 탈피하여 2004년 10월 현재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과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중임
- 2004년 10월 기준 중국, 바레인, 인도, 페루,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지역간 무역협정으로는 AFTA(ASEAN Free Trade Area), BIMSTEC 등을 체결한 상태임

나) 태국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① BIMSTEC :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등 아시아 6개국은 '04.2월 FTA 기본협정에 서명
- ② 바레인 : '03.1월 서명. 2010년까지 양국간 경제연대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하기로 합의
- ③ 일본 : '03.12 양국 정상회담서 '04년 협상개시에 합의. '04.2월 협상 개시
- ④ 페루('04년 초), 미국('04.6월)부터 협상 개시

○ 태국-페루 FTA

- '04년 1월 협상이 개시되어 리마와 방콕에서 3차례 협상을 가짐. '04년 내 타결될 예정
 - 페루는 쌀과 설탕에 20%가 넘는 고관세 적용, 태국은 어분에 대한 보호주의가 강해 앞으로 양국간 민감품목 의견조율 필요. 서비스 분과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여 페루는 negative방식 주장, 태국은 positive 방식선호
 -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원거리,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첫 FTA라는데 의미. 올해 상반기 중 태국의 대페루 수입은 2,730만불, 페루의 대태국 수입은 1,520만불로 낮은 수준
- ⑤ 중국 : '아세안-중국간 FTA 체결 기본협정'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2003년 10월부터 실시중
- ⑥ 인도 : 농산물, 천연자원 위주의 82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 인하가 2004년 9월부터 실시중
- ⑦ 호주 : 2004년 7월 협정 체결, 2005년 1월 발효 예정
-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으로 2010년까지 모든 관세율 철폐를 합의

5) 인 도

가) 인도의 FTA 정책

-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따라 자국의 교역·투자 증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 다목적 차원에서 개도국 위주의 FTA 정책을 추진중
- 또한, 동아시아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지역내 협력강화 목적을 위해, 태국 및 ASEAN과 FTA 기본

협정을 체결('03.10)하고 싱가포르와 FTA 협상 진행중

나) 인도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인도-주변국 FTA 증가로 한국수출에 적잖은 타격 예상
- 협상 진행중인 국가 : 태국('03.10 기본협정 체결), ASEAN('03.10 기본협정체결), SAFTA(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04.1 기본협정 체결),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 기타特惠무역협정(PTA) 체결국가 : 스리랑카('03.1), MERCOSUR('04.1 체결) 등

① 인도-GCC FTA

- '04.8월에 1차 회의 개시. 지난 2월 인도 뭄바이 양자간 산업회의에서 처음 논의. 양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것.
- '02년 125억불이었던 인도-GCC간 교역액은 내년에 150억불 초과할 전망
- 인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45%와 20%를 각각 보유한 GCC와의 FTA체결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인도-ASEAN FTA ('04년 11월부터 일부 발효예정)

- 105개 품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 우리나라는 화학제품, 운반기계류, 밸브, 주조용 주형틀 등의 품목에서 수출차질이 예상됨. 우리나라의 대 인도 주력품목 중 화학제품은 30%, 기계류는 20%, 금속제품 중 납은 20\$, 니켈은 15%의 관세를 물고 있어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무관세 수출이 이뤄질 경우 연간 5천만달러 이상의 수출피해가 불가피할 것.

- 인도 수출품 중 사찰, 압출식 고무나 플라스틱은 올 상반기 985만불, 화학제품은 404만불, 운반용기계류는 369만불, 비합금 니켈은 124만9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림.

③ 인도-일본 FTA

-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회 설치

④ 인도-태국 FTA

- 2003. 10. 9 인도-태국은 2010년까지 양국간 모든 거래물품에 대해 자유무역과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는 FTA를 체결
- 현재의 FTA 대상 84개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및 대태국 주요 수출품과 경합관계가 낮아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
- 다만, FTA 대상품목이 확대(금년말 150여개)되어 자동차, IT 등 주력수출상품이 포함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악영향 증가 우려
 - * 일본 자동차 업계는 거대시장인 인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태국 FTA 체결에 적극적 노력 경주
- 상품교역 외에 투자, 서비스 거래도 2006년도까지 자유화 하도록 규정
- 2004.3월부터 우선적으로 84개 품목(과일·생선통조림, 보석류, 에어컨, TV, 라디오, 가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
 - 2004년(50%인하), 2005(75%인하), 2006년 3월(관세 전면철폐)
 - 양국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FTA 대상품목을 약 15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실무협의 진행중

④ 한국-인도 FTA

- 우리나라와 인도는 '05년 2월부터 3개월 주기로 공동연구를 개시할 계획
- 양국 FTA 체결시 한국은 섬유, 전기기기, 선박, 통신기기, 철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증가 예상
- 급부상 중인 인도의 잠재적 시장규모, 고관세 및 비관세장벽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FTA는 긍정적 효과 기대

6)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FTA 정책

- 싱가폴은 이미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부담이 없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AFTA 외에 '00년 11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호주, 미국 등과도 차례로 FTA를 체결

나) 싱가포르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멕시코('01.7), 캐나다('01.10), 인도('03.4), P3(칠레, 뉴질랜드:'03.9), 한국('04.1)부터 협상 개시
- '04년 11월,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05년 부터 발효에 들어갈 예정
- 우리에게 싱가폴은 칠레에 이어 2번째 FTA협정국으로서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 마련, 싱가포르의 발달된 서비스 부문에서 상호 개방과 진출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싱가포르 기업을 비롯한 제 3국의 대한 투자 증가 등의 효과 기대

싱가폴의 국가별 FTA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AFTA('92), 뉴질랜드('00), 일본('02), EFTA('02), 호주('03), 미국('03), 요르단, 한국('04.11 협상타결)	멕시코('00.6 협상개시), 캐나다('01.10), 인도, 칠레-뉴질랜드('03.9, 파나마)	중국-ASEAN 포괄적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02.11), 스리랑카, 바레인, 이집트, 이란, 쿠웨이트, 파키스탄, 오만, 카타르

7) 대 만

가) 대만의 FTA 정책

- 대만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대에 직면
- 파나마와 '03.8월 FTA를 체결했으며 중미 수교국과 FTA 추진중
 -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 희망

나) 대만의 FTA 추진현황

① 대만-파나마 FTA ('04년 1월 1일 발효)

- 양국간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 자동차 부품, 필터 등 대만과의 경합품목 바이어들이 거래선을 대만으로 전환. 중남미 시장의 경우 그동안 중국제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그나마 거래가 있던 파나마마저 대만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짐. 파나마는 품질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시장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

② 대만-니카라과 FTA

- '04. 9.20 - 24 제 1차 협상 개최

- 시장접근, 규제 및 절차, 투자 및 서비스, 노동 및 환경, 통상 등 5개 분과로 구성됨
- 니카라과는 대만에게 파나마에 이어 두 번째 체결국이 됨

8) 호 주

가) 호주의 FTA 정책

- 호주는 농업·광업 및 서비스 산업이 비교우위 산업으로서, 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비교열위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개발, 틈새시장 개척 등 자생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5년 정도의 단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유예 정도의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정도임
- '04년 10월 현재, 호주는 싱가포르, 미국, 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접국 뉴질랜드와는 FTA보다 광범위한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한 상태임

호주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뉴질랜드('83) 싱가폴('03.7발효) 미국('04), 태국('05발효)	없음	중국, 일본, GCC, 뉴질랜드-호주-아 세안

나) 호주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① 뉴질랜드와 CER(Closer Economic Relations)협정을 체결('83)
 - 동 CER은 제반 경제 문제는 물론 국방, 사회복지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 양국은 EU와 유사한 단일시장화(Single

Market)를 적극 검토중임

② 호주-싱가폴간 FTA 체결('02), '03년부터 발효중

③ 호주-미국('04.8), 호주-태국('04.7)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05년부터 발효 예정

- 호주-태국간 FTA 체결로 '05년 1월 1일부터 과일, 야채, 자동차 등 호주가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5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태국은 연료와 화학제품 등 호주산 수입품목의 50%에 대해 관세를 없앴. 태국이 선진국과 FTA를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동남아 국가연합 10개 가운데 두 번째로 호주와 FTA를 체결

④ 현재 ASEAN + 호주 +뉴질랜드 FTA를 추진중이며 이외에도 일본, 중국과도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며, GCC 6개국 및 이집트 등과의 FTA 체결문제를 검토하는 초기단계에 있음

- ASEAN+호주+뉴질랜드 FTA : '05년 협상 착수, '07년 타결 목표, 늦어도 2017년에는 세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전망

- '03년 ASEAN의 대호주 및 뉴질랜드 수출액은 188억불을 기록, 총 수출의 4.4%를 차지, 동지역으로부터 수입액은 87억불로 총 수입액의 2.4%를 차지함

⑤ 호주-중국 FTA : 양국간 FTA추진 Framework에 합의

- 호주측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제국과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FTA의 대미를 장식, 중국 역시 중국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 및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 실제 FTA 성립까지는 2년여 소요 예상

- ⑥ 호주는 한국과도 FTA 협상을 개시할 용의가 있으며, 지난 '02년에는 한-호 통상경제장관회담에서 동 FTA 문제를 의제화하기를 희망한 바 있으나, 우리정부가 민감한 농업 문제를 이유로 공식 거론하지 못한 바 있음

9)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의 FTA 정책

- 국가 규모가 작은 뉴질랜드는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WTO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이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FTA에 대해 정부와 업계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며, 특히 뉴질랜드는 2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목재, 축산물 및 낙농업 등이 주요 수출품이어서 자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가 주요 관심사

뉴질랜드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호주('83) 싱가폴('01)	P3(싱가폴, 칠레), 태국	중국, 미국

나) 뉴질랜드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① 뉴질랜드는 현재 호주('83)와 싱가포르('01) 2개국과 자유무역협정 (CEP: Close Economic Partnership)을 기체결
- 상기 협정은 무역부문은 물론,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통틀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음

※ 캐나다와는 FTA는 아니지만, '82년 FTA와 유사한 쌍무 무역·경제협력협정(TEC: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상당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② 미국-뉴질랜드 FTA

- 호주와 동시에 FTA 체결을 추진중이었으나 이라크 전에서 나타났던 양국간 갈등,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의견 상충 등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FTA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적극적이나 미국은 정치적인 요인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③ 홍콩, 중국-뉴질랜드 FTA

- '01년부터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서비스 분야 및 원산지 규정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04년 1월 중국 주석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정 체결은 빠르면 '05년 연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④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FTA(Pacific 3 FTA)

- '0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1차 협상을 개시하고 '04년 8월에 웰링턴에서 2차 협상을 가짐. 전통적 무역협정을 포괄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노하우(특히 낙농업분야)를 강화시키는 전략적 연대가 될 것임

⑤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AFTA와 FTA 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음. AFTA측으로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뉴질랜드-호주-아세안의 FTA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⑥ 태국-뉴질랜드 FTA

- '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3차례의 협상을 가짐. 관광, 교육 및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이며 가장 민감한 농산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04년내 타결 가능

다. 구주지역

1) E U

가) EU의 FTA 정책

- EU는 지역주의의 발원지이나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와의 차별화된 FTA 전략 추진
 - 유럽국가와는 FTA 수준을 넘어 유럽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공동체 완성에 주력
 - 역외 국가와는 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
- 역외국가인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 MERCOSUR,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 혹은 추진중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EU,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MERCOSUR	ASEAN, 대만, 싱가포르, 이란, GCC 6개국

나) EU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10개 회원국 신규가입('04.5) 후의 EU

- 인구 4억5천만명, 역내 GDP 8조 3천억불 규모
- 세계 수출의 20%, 세계무역의 19%, 세계해외투자의 46%, FDI 유치의 2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권으로 부상
 -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07년 가입예정
- MERCOSUR와 올해안 체결을 목표로 협상중이나 농산물시장 개방(소고기)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에 난항
 - 프랑스는 동 협상시 농산물 시장 개방, 특히 소고기 시장 개방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
 - EU가 MERCOSUR의 농산물시장개방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MERCOSUR의 동 품목수출이 26억불 증가할 전망
- ASEAN : '03.4 양 블록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에 합의
- EU-멕시코 FTA('00. 7월 발효)
 - EU가 비 EU국가와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됨
 - FTA 발효 이후 멕시코 제품의 82%와 EU 제품의 48%가 상호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 따라서 EU FTA 미체결국인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은 멕시코 상품 대비 비교열위에 놓임

2) EFTA

가) EFTA의 FTA 정책

- EFTA 체결 : '60년 EC에 가입하지 않은 7개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를 중심으로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체결

- 이후 영국('72), 덴마크('72), 포르투갈('85)이 EEC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EFTA 탈퇴
- 오스트리아, 스웨덴 역시 '95년 EU에 가입하면서 EFTA에서 탈퇴
-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회원국 구성
- EFTA는 EU확대에 자극받아 중동구 유럽, 중남미, 지중해 연안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중

나) EFTA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1992년 EFTA 최초의 FTA를 터키와 체결한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동구 유럽, 발틱연안 국가, 아프리카 등으로 점차 그 체결 대상국을 확대
- 2000년대 들어 유럽을 넘어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2000), 싱가포르(2002), 칠레(2003)등과 FTA 체결
- 최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ASEAN, MERCOSUR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추진도 적극 검토
- 우리나라와 EFTA는 '04. 8월 이래 2차례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05. 1월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 EFTA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맺는 최초의 선진국과의 협정으로, FTA 체결시 국내산업의 반발과 조정비용이 높지 않은 장점이 있으며 FDI 유입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잠재이익은 클 것으로 전망

EFTA 국가현황 및 FTA 체결국가

EFTA	FTA 체결국가		협상 검토 및 진행국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상 4개국	EU	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별 쌍무협정 체결)	
	유럽	헝가리('93), 폴란드('92) 구체크공화국('92), 에스토니아('95), 라트비아('95), 리투아니아('95), 슬로베니아('95) 루마니아('92), 불가리아('93) 마케도니아('00), 크로아티아('01)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주) 밑줄친 국가는 EU에 가입된 국가들로서 동국가들과의 협정은 EFTA-EEA간 협정으로 대체되었음

EFTA	FTA 체결국가		협상 진행국가
	미주	멕시코('00), 칠레('03)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아시아	싱가포르('02)	태국, 한국('05.1월부터 협상 개시 예정)
	중동	터어키('92), 이스라엘('92), PLO('99), 요르단('01), 레바논, 모로코('97)	이집트, 튀니지아 (이상 협상 최종 단계에 있음) GCC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알제리아
	아프리카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자료원 : Four European Nations Facts & Figures, 2004. EFTA)

라. 중동지역

1)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83년 페르시아만의 아랍산유국들이 역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기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6개 회원국

- 대외적으로 GCC라는 블록의 한 형태로 FTA 체결에 적극적

가) 미국-GCC FTA

- 미국은 GCC 전체 블록 보다는 각 국별 개별적 체결 선호.
- GCC국들과 현재 추진되는 일정을 보면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우선순위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오만과도 '04년 9월초 FTA체결을 위한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 최종 FTA는 2005년 중순이나 말경 추진하는 일정임.

나) EU-GCC FTA

- EU는 각 개별국인 아닌 GCC라는 한 블록과의 FTA체결('07년)을 희망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GCC블록내 관세공동체, 단일시장, 단일 통화권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
- 이로 인해 GCC국들은 역내국간 2003년에 이미 통관 및 관세단일화를 시행하였으며 2단계인 단일시장 형성과 3단계인 단일화폐시장 설립 등은 각기 2007년 및 2010년을 시한으로 일정 제시
- 그러나 GCC간 문화적 경제적 정서적 편차가 많지 않고 화폐시장도 안정된 양상으로 인해 2단계 단일시장은 2005년에, 3단계 단일화폐시장은 2007년으로 당초 일정보다 2년씩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임
- 이로 인해 EU측에서 요구한 GCC국간 최종 단일화폐시장이 완성되는 2007년에는 EU와의 FTA도 공식 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인도-GCC FTA('07년 예정)

- 인도와는 금년 8월말 FTA의 전단계인 Framework Agreement를 맺음. 이 협정식에서 오는 2006년 1월에 개최되는 '제 2차 인디아-GCC 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한 상황
- 그러나 인도와는 큰 장애물이 없고 GCC지역에 거주하는 주요 외국인력들이 인도인들이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이 2007년경에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GCC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중

2) 파키스탄의 FTA 추진현황

구분	대상국가	발효예정일
시행예정	케냐	'05.2.1
	방글라데시	'06.1.1
	스리랑카	'06.1.1
추진 검토중	중국	2010(목표)
	인도	2011(목표)
	CIS	2010(목표)

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차별사례

1. 개요

가.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

- 최근의 해외 시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 사항들은 전통적인 관세장벽 보다는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는 관세장벽과는 달리 정확한 실상 파악이 어려움
- 정부발주 입찰 프로젝트에 FTA 미회원국 제한, 정부조달에 있어 FTA 회원국의 응찰자격을 WTO 정부조달 회원국의 자격보다 완화, 기술규격인증, 복잡한 통관심사절차 등의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존재

나. 주요 경쟁국들의 FTA 체결 활발

- 우리와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멕시코, 대만, 중국 등도 아세안, EU, 미국,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 폭넓게 FTA를 체결하는 추세여서 우리의 FTA 체결 확산이 더욱 시급한 상황
-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에 이어서 최근 필리핀과도 FTA 체결, 중국은 아세안과 FTA 추진, 대만도 파나마 및 기타 국으로 확대, 멕시코는 미국을 비롯한 42개국과 FTA를 체결 등
- 아세안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 중국, 일본, 인도 등은 FTA 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도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함
 - 아세안이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제품 경쟁력의 급속한 악화가 우려됨

다. 최근의 FTA협정은 포괄적 협정으로 가는 추세

- 기존의 FTA가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로 관세인하 및 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최근의 FTA는 투자, 경쟁, 조세협약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
- 서비스무역,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WTO에 없는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환경규정까지 새로 포함 추세
- 따라서 FTA 미체결에 따른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광범위할 것이며 관세나 비관세장벽, 정부규제 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임

라. 현재까지 파악된 차별 유형

1) FTA 역내외 관세 차별로 인한 피해 사례

-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FTA 미체결국에서 여전히 관세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그만큼 불리해짐
- 특히, FTA 역내외 관세차이가 큰 멕시코, 아세안과 같은 지역에서는 한국산의 수출 가격경쟁력에 크게 불리한 상황

2) 정부발주 입찰 프로젝트에서 FTA 비회원국의 자격 제한

- 또한 정부발주 입찰 프로젝트에 FTA 비회원국의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도 조사됨
-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정부는 국제 입찰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응찰 우선권을 부여
- 멕시코 석유공사 PEMEX의 해상플랫폼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공고

문의 입찰 참여 자격이 멕시코 업체와 FTA 체결 국가 업체로 제한

- 캐나다에서는 NAFTA 역내국에게 WTO정부조달 회원국 보다 많은 응찰 기회를 부여
 - WTO 회원국의 경우 WTO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 서비스, 물품 입찰에 응찰 기회를 부여
 - 그러나 NAFTA 회원국에게는 WTO정부조달협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 적용함에 따라 NAFTA 역내국에 보다 많은 응찰 기회를 부여

3) 기술규격인증협정 미체결로 인한 애로 사례

- 유럽, 북미 등지에서 기술규격인증협정 미체결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자격을 따내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 있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주요 사례로는 유럽의 CE마크제도, 아르헨티나의 IRAM표준규격인증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MRA를 포함한 FTA체결 또는 별도의 상호기술인정협정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미국-캐나다는 NA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인증절차 상호인정 합의

4) 기타 비관세 장벽

- 그 밖에 미국은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멕시코, 캐나다 등 NAFTA체결국은 제외, 한국 등 8개국 산에 적용하는 등 차별적 적용 사례도 조사됨
- 미국은 한국, 일본 등 8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철강수입제한조치를 발동, 8-30% 관세부과로 가격 경쟁력 상실('02.3)
-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하고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

- 터키는 아시아 수입품에 대해 이중 통관심사대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입품의 경우 한 차례 심사로 통관이 완료되는 반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수입품의 경우 다른 라인을 설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추가로 소요되고 있음

< 역내외 관세차별로 인한 피해사례 개요 >

국가	품목	관세	수출영향도
1) 미국	컬러 TV	· 한국: 5% · NAFTA: 무세	· 일부 대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생산, 무세로 들여옴. 반면 아남 등은 5%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불리 · 중국산 컬러 TV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은 가격경쟁력 열위
	자동차부품	· 한국: 2.5% · NAFTA: 무세	· 자동차부품은 특성상 마진이 작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 · NAFTA역내국인 멕시코와의 수출격차는 '03년 195억불로 한국수출액의 12.6배('90년 6.5배)로 매년 확대됨
	섬유 및 의류	· 한국산: 최고 32%까지 · FTA 회원국: 무세 또는 아주 낮은 관세 · 일부 중남미국, 아프리카: 한정된 범위 내 무관세	· '05.1월부터 섬유쿼터 해제에 따라 수입관세가 미국 수입시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부상중. 우리 섬유 및 의류의 가격경쟁력상실 우려
2) 캐나다	섬유	· 한국산: 13-18%	· 한국산과 동일한 세군의 멕시코는 NAFTA로 무관세 적용을 받아

		• FTA 회원국: 대부분 무관세	가격경쟁력 크게 향상, 수출증가
3) 멕시코	자동차	• FTA비회원국: 50% • NAFTA:무세 • 중남미산:일정 쿼터에 의해 무관세	•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로 인해 50%의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하나 현지 크라이슬러와의 제휴를 통해 무관세 수출중 • 일-멕 FTA체결로 인해 타격 예상
4) 브라질	자동차	• FTA비회원국: 35%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 FTAA(미국, 멕시코), MERCOSUR-EU FTA(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
5) 아르헨티나	일회용주사기	• FTA비회원국: 17.5%	•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아르헨티나 일회용주사기 시장을 석권하였으나 MERCOSUR 발효에 따라 브라질 산에 밀림
6) 페루	모니터	• 멕시코:무세, • 브라질:50%할인 • 한국:7%	• 페루는 전형적 가격시장으로 관세가 수입여부에 큰영향
7) 베트남	철강	• 국내생산되는 품목:0-40% • 생산되지 않는 품목:0-5% • CEPT 관세율은 40%--> '06년 5%까지 점진적인하	• 한국은 철강 제품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CEPT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음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AFTA 추진에 따른 역내 상품수입관세 인하 프로그램
8) 필리핀	전분	• AFTA회원국: 3% • AFTA비회원국: 7%-->20%인상됨	• 동남아 제품과 경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종이류	• AFTA회원국: 0-5% • 한국:0-15%	
10) 요르단	자동차용	• F T A 체 결 국(UAE):무세	•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관세차별로 가격경쟁력에 뒤져 대요르단 수출

	엔진오일	• 한국: 30%	포기
11) 모로코	자동차	• EU :매년점차 적 관세인하 • FTA비회원국 :승용차32.5%, 상용차40-50%	• 모로코-EU간 관세인하 협정으로 '04년 현재 우리 승용차는 EU보다 1.9%높은 관세 적용. 매년 관세차는 심화되어 우리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에 타격 전망

(자료원) 무역관 종합

2.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상품 차별사례 현황

가. FTA 역내외 관세차별로 인한 피해사례

1) 미주지역

가) 미 국

□ 조사결과 한국은 NAFTA체결국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관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액 대비 관세부과율은 2.56%인데 비하여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 (0.07%), 멕시코 (0.14%) 등은 아주 낮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의 대미수출 상위 300개 품목 (HS 10단위기준) 가운데, 절반이 넘는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2%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섬유제품(6.5%-32%), 자동차 및 부품(2.5%), TV, 세탁기 등 소비자 가전제품(1.4%-3.9%), 타이어(4.0%), 모터(2.8%) 등 전기부품 등임

- 만일 미국과의 FTA체결이 일본, EU국가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늦어진다면 관세납부에 따른 경쟁력 저하의 영향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임

① 사례 : 대미 컬러 TV 수출 타격

- 미국의 대한 컬러 TV 수입 관세는 5%, 멕시코산은 무세임
- 이에 따라 삼성, 대우 및 LG등 대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무세로 반입하고 있으나 한국전자, 아남전자 등은 5%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멕시코산 및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에 불리

- 최근 중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 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컬러TV는 가격 경쟁이 안돼 수입상들이 주문을 기피하고 있음

② 사례 : 자동차부품 수출애로

-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역내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은 자동차 부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FTA 미체결에 따라 평균 2.5%의 관세를 내고 있어 자동차부품은 제품 특성상 마진이 작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사된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는 NAFTA의 영향에 따라 매년 자동차부품 수출이 급성장하여 제 1위의 수출국으로 입지를 굳혔지만, 한국은 수출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역내국인 멕시코와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2003년에는 195억불의 차액이 발생하여 한국 수출액의 12.6배(1990년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와 같이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멕시코와 비교하여 한국의 수출신장도가 더디며, 매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통계적으로도 FTA 미체결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이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을 확대해 나가듯이 한국도 미국의 OEM 시장진출확대, 틈새시장 공략, 기술집약적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대미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③ 사례 : 섬유 및 의류 가격 경쟁력 하락

-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하여 수입쿼터가 완전 철폐됨. 따라서 수입관세가 미국 수입시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은 기본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 제품에 대하여는 무관세 또는 대폭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 3국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한 의류에 대해서도 한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산 섬유와 의류는 최고 32%까지의 고율의 수입관세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나) 캐나다

□ 역외국産 섬유에 고관세 부과

- 한국산 섬유제품은 캐나다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13-18%의 높은 관세 부과. 반면, FTA 역내국은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
- 직접 피해사례 : “한국 J社”
 - 텐트, 점퍼 등의 캠핑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한국지상사 J社는 취급제품에 현재 18.5%의 고관세 부과 받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세군에 속했던 멕시코는 93년 NAFTA 체결 이후, 무관세를 적용받아 18% 가량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불러일으켜 멕시코의 對캐나다 섬유제품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국내 업체들의 멕시코 발주도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J社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시켰으나 2003년 1월부터 캐나다는 최저개발국 섬유제품에 관세 및 쿼타를 철폐, 또다른 경쟁상대로 방글라데시 등의 최저개발국이 부상됨(단, 중국은 개도국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철폐 혜택을

입지 못함)

- 결과, J社は 방글라데시로 공정을 발주하는 경쟁업체와 상대하기 위해 13-15%의 출혈수출을 함

다) 멕시코

□ FTA 미체결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 2004년 1월 1일부로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 유지해 온 ‘자동차 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철폐 하면서 멕시코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됨
- 그러나,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방은 하되 관세율을 기존 20-30%에서 50%로 인상하면서, 한국산은 높은 관세를 납부하면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무세 수입차량과 경쟁해야 하는 실질적 장벽에 부딪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북미산 자동차 및 EU산은 전면 무관세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중남미산(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일정량 쿼터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경제 보완협정 자동차 관세인하 계획

연도	멕시코-브라질		멕시코-아르헨티나	
	관세(%)	쿼터(대)	관세(%)	쿼터(대)
2002	1.1	140,000	0	50,000
2003	0	165,000	0	50,000
2004	0	185,000	0	50,000
2005	0	210,000	0	50,000
2006	0	쿼터해제	0	쿼터해제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 현재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 핵심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크라이슬러와 업무 제휴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중이나, 높은 관

세로 인해 직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음.

- 일본-멕시코 FTA까지 체결되어 한국산 자동차 수출 애로 우려

라) 브라질

□ 브라질정부의 자동차 산업 보호정책 및 피해 현황

- 금년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대수 전망치는 210만대로 브라질은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임
- 브라질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공산품세(IPI) 인하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동차 산업을 지원 중에 있음
- 특히 자동차를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고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외공동관세 최고관세율인 20% 보다 크게 높은 35%로 인상해 역외국산 자동차 수출이 절대적으로 불리함
 -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1995년 관세 동맹을 공식출범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2년 멕시코와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통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역내산인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산 수입 확대와 높은 수입관세, 브라질 국내경기둔화 현상에 따라 2001년부터 급감추세를 보여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 추이 (단위:백만불,%)

	2000	2001	2002	2003
금액(증감률)	164(118.0)	111(-32.6)	31(-72.0)	13(-57.4)

자료원 : KOTIS

- 브라질에는 미국, EU,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부분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브라질 시장 및 인근 중남미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자동차 투자인출은 전무한 상황임

○ 대응책

- 브라질의 높은 수입관세장벽을 회피하고 미주자유무역지대 및 메르코수르-EU FTA 창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현지투자 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해 멕시코와의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 EU, 인도, 남아공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관세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메르코수르와 자동차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특혜관세협정 조기 체결 추진 필요

※ 참고 : FTA 미추진으로 인한 수출영향 품목

품목	관련 FTA 및 주요 경쟁국
자동차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멕시코)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멕시코) * MERCOSUR-EU FTA(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자동차 부품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멕시코) * MERCOSUR-EU FTA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직물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멕시코) * 미주자유무역지대(멕시코, 과테말라)
IT제품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 MERCOSUR-EU FTA(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기계류	* 미주자유무역지대(미국) * MERCOSUR-EU FTA(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주 : *는 협상중

마) 아르헨티나

- 일부 품목이 아닌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MERCOSUR 역내국인 브라질산과의 경쟁에서 한국산이 열위를 보이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 섬유·직물, 타이어, 가전제품 등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일회용 주사기를 들 수 있음.
- 사례 : 대 아르헨티나 일회용 주사기 수출 타격
 -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아르헨티나 일회용 주사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으나 MERCOSUR 발효에 따른 브라질산의 가격경쟁력 대폭 제고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산의 시장점유율 감소 추세
 - 한국 등 역외국산은 17.5%의 수입관세를 무는 반면 브라질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무세여서 아르헨티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바) 페루

- 페루는 주변국들과 활발히 관세협정을 맺는 국가로 현재 안데안 회원국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중 하나이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와는 별도 관세인하협정을 체결한 상황임
- 안데안 회원국과는 이미 많은 품목들이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의 경우에는 대부분 25%에서 100%까지의 관세인하를 해 주고 있음
- 이와 같이 각 국가별로 주어지고 있는 특혜관세는 수입량에 그대

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컴퓨터모니터를 꼽을 수 있음. 페루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브라질에 50%의 관세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는 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페루 모니터 수입현황

(단위 : 미화불)

국 가	2001	2002	2003
브라질	1,010,332	5,958,870	10,276,934
중 국	4,090,103	5,380,515	8,093,517
인도네시아	20,374	108,006	4,278,580
멕시코	13,668,354	10,772,960	4,059,148
미 국	3,904,453	3,993,993	3,199,616
한 국	501,104	2,097,393	2,010,508

- 페루는 전형적인 가격시장으로 이와 같이 관세 몇 % 차이가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함. HS코드 3901.10의 폴리에틸렌의 경우 2002년 일반 관세가 12%에서 4%로 떨어지기 전에는 미국 등 인근국에서 수입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증한 상황임

페루 폴리에틸렌 수입현황

(단위 : 미화불)

국 가	2001	2002	2003
한 국	5,727,210	3,938,559	10,600,866
미 국	8,068,216	12,775,281	10,551,233
아르헨티나	2,843,674	3,424,357	5,433,929
브라질	786,512	1,893,395	3,140,441

- 현재 페루는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페루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제품이 페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불리한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2) 아시아지역

가) 베트남

□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애로

○ 주요내용

- 기본적인 형태의 철강(품목)은 수입관세율은 0%이므로 역내외 국 간 차이 없음.
- 일부 철강제품 가운데 국내 생산이 되는 제품(welding electrodes, galvanized steel sheet, galvalume steel sheet, color-coated steel sheet, steel bars, rods, angles, shapes and sections)의 경우, 수입관세율 0~40%
-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hot-rolled & cold-rolled steel sheet, plate & coil등)은 0~5%임.
- CEPT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4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건축용 철강제품 특히 HS Code 7210 (예시coated flat-rolled steel)은 2001년 혹은 2002년도에 관세율이 20%로 대폭 인하되고 200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5%까지 인하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ASEAN은 베트남이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HS code 7210 과 7212 품목을 포함한 철강에 경쟁력을 보이고 2003년 7월 시작한 관세 인하는 주로 ASEAN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대 베트남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제품 (특히 welding electrodes, galvanized steel sheet, galvalume steel sheet, color-coated steel sheet)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CEPT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음.
- 결과적으로 베트남 수입상들은 보다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음.

- 더욱이 non-ASEAN에서 수입되는 galvanized /galvalum /color-coated steel sheets에 대한 수입관세가 2003년 9월부터 30%~40% 인상된 반면 CEPT 관세율은 2003년에 20%로 인하되었고 2004년에는 15%로 2005 & 2006년에는 5%로 인하될 예정이다.
- 결과적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2003년도에 한국산 철강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2004년과 그 이후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실은 2004년 3월부터 세계적인 원자재 난으로 인해 철강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국내 철강가격의 안정과 충분한 공급을 위한 조치로 일부 철강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향후 철강가격이 하락하면 정부는 다시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것임.
- 결론적으로 한국산 철강은 AFTA의 CEPT의 수입관세 인하로 인해 반사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몇 종류의 coated steel products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악영향을 받고 있음.

한국의 대베트남 연도별 철강 수출액 (단위 천미불)

품목/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철강제품(61)	75,894	68,645	81,118	219,870	130,763

자료 : KOTIS, 괄호안은 MTI임.

나) 필리핀

- 전반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간 관세율이 금년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5%로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 제품은 최고 30%까지의 일반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 가전제품 : 우리나라 생산품의 직접 수출보다는 동남아 인근국가 현지공장에서 우회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아세안 관세인하에도 특별한 애로는 없음.
- 식품원료인 전분 : 아세안 관세율은 3%이지만 일반관세율은 2003년까지만 해도 7%라 어렵게 경쟁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20%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쟁이 거의 어려워짐.
- 종이류 : 아세안은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제품은 0%에서 최대 1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동남아 제품과 경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3) 중동아프리카지역

가) 요르단

- 6월중 암만 무역관을 통해 자동차용 엔진오일 조사대행을 실시한 바 있는 국내 S사는 품질을 인정받아 유럽 등 선진국에도 제품을 수출중임.
- 요르단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UAE로부터는 무관세로 제품을 수입하는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시에는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
- 원거리로 인한 운송비 부담 이외에 차별적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 요르단 수출을 포기

나) 모로코

☐ 대모로코 자동차 수출 타격

- 주요내용

- 모로코-EU간 체결된 관세인하협정이 2003년도부터 적용되어 EU산 자동차는 매년 점차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승용차 32.5%, 상용차는 40-50%의 고관세가 적용됨.
- 2004년도에 우리나라는 EU와 비교, 승용차의 경우 1.9%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으며 매년 관세차가 심화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EU 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계획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승용차	30.6	29.6	28.8	23.7	18.8	14	9.1	4.2	0
상용차	32	28	24	20	16	12	8	4	0

- 기아 자동차 등 현지딜러는 금년도에는 유로화 강세 효과로 EU 자동차와의 관세차를 상세할 수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는 가격 경쟁력 열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산 자동차도 EU에 신규 가입한 동구국가에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란 조언.

○ 참고사항

- 200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 기아자동차는 각각 현지시장 점유율 2.3%, 2%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 모로코 수출 주종품목임.
- 우리나라 다른 주요수출품인 가전, 정보통신제품의 수입관세율은 낮기 때문에 모로코-EU 관세인하협정에 의한 관세차 영향은 미미함

나. 정부발주 입찰프로젝트에서의 제한

1) 캐나다

☐ NAFTA 역내국 특혜 부여

- 현황 : NAFTA 역내국에는 WTO-AGP(정부조달협정)보다 많은 응찰 기회 부여
 - 캐나다는 WTO 회원국에게 WTO-AGP에 의거, C\$261,2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입찰과 C\$10백만 이상의 건설 입찰의 경우, 응찰기회 부여
 - 반면, NAFTA 역내국에는 NAFTA 조약 10조에 의거, U\$56,190 이상의 서비스, U\$25,000 이상의 물품, U\$7,304,733 이상의 건설의 경우 응찰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NAFTA 회원국에 보다 많은 기회 부여

對NAFTA 역내국 및 WTO 회원국 입찰 조건

유형	NAFTA	WTO-AGP (2003년 기준)
서비스	U\$56,190	C\$261,200
물품	U\$25,000	C\$261,200
건설	U\$7,304,733	C\$10,000,000

2) 멕시코

☐ FTA 체결국에 우선권 부여

- 멕시코 정부는 2003년 2월 18일 관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입찰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내국인 대우 및 응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동 발표 이후, 멕시코 내 주요 국제입찰에서 내국인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응찰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PEMEX 미나띠틀란 정유소 재정비 사업 사례

- 일례로, 현재 입찰 진행 중인 멕시코 석유공사 PEMEX의 미나띠틀란(Minatitlan) 정유소 재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국내 업체 및 FTA 체결국가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가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의 거센 반발로 동 제한을 철회한 바 있음
- 당시 일본측은 PEMEX에 압력을 가해 경제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음. 즉, PEMEX는 FTA 체결국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일본이 PEMEX에 기 제공한 금융 및 새로 약정된 금융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경제부 측에 국가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일-멕 FTA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FTA 체결국 우대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미체결국인 한국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 PEMEX 해상플랫폼 프로젝트 사례

- 금년 초 한국 S기업에서 참가를 검토했던 PEMEX Ku Maloop Zaap 해상 플랫폼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공고문에 입찰 참여자격이 멕시코 업체와 FTA 체결국가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 기술규격인증 애로

- 유럽, 북미 등지에서 기술규격인증협정 미체결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자격을 따내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 있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 FTA의 MRA분과 또는 별도의 상호기술인정협정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사례

1) 캐나다

□ 미국-캐나다간 인증제도 상호인정

- 현황
 - 현재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캐나다규격협회 :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전기제품은 물론 수입품 모두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 직접 피해사례는 없으나 한-캐나다 FTA 협상시 고려 요망
 - 캐나다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해 양국간의 인증 절차를 상호 인정토록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CSA는 1992년 미국 노동성산하 직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소(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로 지정을 받았음
 - 이에 따라 OSHA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CSA가 미국 규격에 따라 인증한 경우 “NRTL/C”나 “NRT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UL에서 C-UL 마크를 인증하는 경우와 같이 CSA 및 UL을 동시에 승인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향후 전망

- FTA 체결시 규격인증 상호인정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은 한국산 제품들의 캐나다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참고) 미국내 CSA의 통용범위

- CSA 인증은 미국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조약정으로 허용된 대부분의 전기제품에 대하여 미국 연방은 물론, 주정부 등 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2) E U

가) EU의 CE마크 제도(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 EU와 상호인정협정 미발효로 주요 수출품의 CE마크 획득 없이는 수출불가
- 제품의 안전과 환경 필요조건이 EU 법령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킴을 의미하는 CE는 EU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며 유럽 각국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강제규정
- 대상품목은 기계, 완구, 전기 전바, 통신기기 등 21개 품목군이며 (대 EU수출품목 중 34% 차지) 최근 품목 확대 실시 중
- CE마크의 취득 평균 소요기간 및 비용은 품목마다 다르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對 EU 상호인정협정 기체결 국가 : 스위스 ('96), 미국, 캐나다, 호주 ('98), 일본('02)

나) 포르투갈의 CE마크로 인한 피해 사례

- 2002년, 방직기계 환풍 시설의 수출을 위해 현지 상담회에 참가한 한국 T사(서울 소재)의 경우, 바이어의 적극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CE마크 획득 비용 및 장기간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포르투갈 수출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음.
- 또한, 한국 보일러 제조업체의 경우 CE마크 비획득으로 포르투갈 수출이 6개월간 지연된 사례도 있음.

다) 터키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CE인증 및 TSE 테스트 의무화 요구

- 주요내용
 - 터키 정부는 2004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CE인증마크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2004년 4월부터 EU이외 지역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TSE(터키표준협회) 테스트를 의무화함
 - 즉, TSE 테스트의 경우 EU와 비EU국가를 차별하여 시행함으로써 비EU국에 속한 한국제품의 터키 세관 통관에 피해가 발생함
- 피해사례
 - 동 조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홍보과정이 없었던 관계로 한국의 수출업체는 물론 터키 수입업자들 역시 혼란을 겪었음
 - 특히, 동 조치의 시행에 대해 사전인지가 없었던 한국 수출업체들의 경우 통관 지연 혹은 통관 불가로 수출품을 반송시키는 등 혼란을 겪었음
 - 게다가 터키 정부는 비EU 국가 중에서도 일부 국가(미국, 일본 등)의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여 규정 적용에 일관성을 상실하여 한국 등 피해를 많이 본 국가의 비난을 받기도 함

3) 아르헨티나

- 전기전자 제품을 비롯한 상당수 품목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표준규격(IRAM) 취득이 필요하나 동규격 획득에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수출 호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획득까지 소요비용도 만만찮음

-IRAM은 물자합리화기구(Instituto Argentino de Racionalizacion de Materiales)로서 1935년에 발족한 아르헨티나 표준규격을 관장하는 기관임

- 현재 아르헨티나 측 IRAM과 한국측 KTL(산업기술시험원)간 MOU가 체결되어 있어 규격 획득 시간 단축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긴 하나 양자간 상호 규격인증 양허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IRAM 규격 인증 획득에 아직도 많은 애로가 상존하고 있음

라. 기타

1) 미국 : 긴급 수입제한 조치 차별적 적용

- 사례 : 미 철강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멕시코 및 캐나다(NAFTA 회원국)는 제외, 한국 등 8 개국 산에만 적용
- 주요 내용
 - 미국은 한국, 일본 등 8 개국산 판재류 등 14개 철강 제품에 대해 2002.3. 철강 수입제한조치(Section 201조) 발동, 8-30%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사실상 상실.
 -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하고도 조치대상에서 제외됨
 - WTO, 비례(parallelism)원칙 위배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및

제 2.2조 위반)된다면 위법 판정

- 미 철강 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표 및 WTO 판정 과정
 - 미국,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Section 201조) 발표 (2002.3.5)
 -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8%~ 30% 관세부과
 - EU, 미국의 Section 201조를 WTO에 제소(3.7)
 - 한국, 일본,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및 뉴질랜드 제소 (3.20-7.8)
 - EU, 한국, 일본 등 8개국 공동 WTO 분쟁 패널설치(7.15)
 - 패널 중간보고서 배포(2003. 3. 26)
 - WTO, 최종보고서 당사국들에게 배포(5.2)
 - WTO, 최종보고서 발표(WTO 판결)(7.11)
 - WTO 판결 주요 내용(WTO,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최종보고서)
 -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 하고도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례(parallelism) 원칙 위배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
 -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unforeseen developments)을 입증하지 못함.(GATT 제19조 위반)
 - 판재류, 석도강판 등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위반)
 -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및 제4.2조(b) 위반)
- 대미 긴급수입제한 조치 대상품목 수출실적(단위 : 천톤, 천불, %)

	'99	2000	2001	2002
수출물량	2,698.7	2,499.7	2,306.7	1,755.3
수출액	1,117,075	1,255,262	1,119,403	873,512

(자료원 : 외교 통상부)

○ 우리나라의 피해 사례

-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Section 201) 발동 후 대미수출 물량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피해를 봐왔음

. 2002년의 경우 대미 수입제한조치 대상 품목 철강수출은 175만5천t으로 전년대비 23.9% 감소했으며 수출금액도 8억7천300만달러로 22.0%감소하였음

. D제강, Y 철강 등은 대미수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봤음

. Y철강의 경우 대미수출 물량이 2001년에 18만9천t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12만5천t으로 33% 가량 줄어들었음

* 기타 : 현지 우리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제품의 거의 대부분 품목이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함

2) 터키, 아시아 수입품에 대한 2중 통관심사대 설치, 운영

○ 주요내용

- 터키 정부는 2004년 3월부터 세관 통관 심사대를 2중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입품의 경우는 'The Yellow Line'을 통과시키는데 한 차례의 심사로 통관이 완료되는 반면, 중국, 한국 등 극동 아시아 수입품의 경우는 'The Red Line'을 설치하여 두 차례에 걸쳐 통관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피해사례

- 한국의 수출품의 경우 2중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통관에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되며, 세관보관료, 통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3) 네덜란드, LCD 모니터 관세 부과 관련 우리기업 피해사례

□ 기존의 관세 부과 현황

- 네덜란드 세관을 접촉한 결과, 현재 네덜란드로 수입되는 LCD스크린에 대한 관세는 EU 신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고 밝힘. 즉 컴퓨터 전용목적에만 사용되는 LCD스크린은 CN 8471류(컴퓨터모니터)에 포함하여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LCD스크린은 CN 8528류에 포함시켜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세관 접촉자 : Mr. Blom, Information Officer BTI office Dutch Customs)
- 네덜란드는 금년 4월 신규 개정된 EU 규정(Commission Regulation 754/2004 - 2004.4.21)에 따라 5월 13일부터 컴퓨터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LCD스크린에 대해 14%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신규 개정된 EU 규정에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DVI커넥터나 관련 제어커넥터를 장착하고 있는 컬러플라즈마 스크린을 CN 8528류(컬러영상모니터)으로 분류함으로써 14%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네덜란드 정부는 LCD스크린 역시 플라즈마스크린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CD스크린을 플라즈마스크린에 대한 EU 신규규정에 적용시키고 있음.

□ 문제점

- 독일 등 일부국가 아직까지 0% 관세율 부과
 - EU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동일제품에 대해 아직도 0%를 적용하는 등 동일 품목에 대해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대 EU수출시 통관지역 선정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네덜란드 유통업자 및 관세담당 변호사들 항의
 - 지난 6월 네덜란드 유통업자 및 관세담당 변호사들은 네덜란드정부에 독일과 네덜란드가 LCD 스크린에 대한 각기 다른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항의하였음.
 - * 네덜란드 유통업자 및 관세담당 변호사들은 정부가 EU 규정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LCD스크린에 대해서 14%의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다수의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LCD 스크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가 유럽물류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사례

- L전자의 경우 네덜란드의 관세부과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을 전량 영국 웨일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수입 대체
- S전자는 LCD스크린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현재 네덜란드 수입의 50%를 슬로바키아공장에서부터 조달받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한국 및 중국공장에서부터 조달받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

□ 대응책

- 수입관세 부과시 적극적인 이의 제기

- 동 제품의 대 EU수출시 14% 수입관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해당 세관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필요
- 향후 관세당국의 현행 입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시, 관세납부 거부 의사 표명한 건에 대해서만 기 지불된 관세의 반환요청이 가능
-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한국정부와 기업이 공조, 동 제품 통관시 법무법인을 통해 현지 세관에 이의를 제기토록하고, 기 납부된 관세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EU의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

- 동 사안에 있어 회원국별로 상이한 관세율 적용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몇 주내로 EU차원의 관련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짐
- 이를 따라, 이해 당사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IT제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기로 한 WTO협약 이행요구 등 정부차원의 대 EU 로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 EU 전회원국의 14% 관세율 확대적용 이후 대응책

- EU의 LCD 및 플라즈마 모니터에 대한 14%관세 적용을 다시 한번 전 회원국에 공식 통보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
- 이를 위해,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수입, EU내 현지 조립생산을 확대하고, 컴퓨터 전용 모니터임을 입증하여 14% 관세율 예외 적용 요구와 함께, 관세 산정가액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Ⅲ. 시사점

1.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GDP 대비 70%)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를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이제 FTA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 최근 WTO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와 맞춤형 통상이익을 얻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인도 등도 ASEAN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가로서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제는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따라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업종간 이해득실이 상쇄되고 교역장벽이 철폐됨으로써 무역과 투자확대가 가능할 것임
 - 한·칠레 FTA의 경우 공산품이 이득을 보나 농산물 피해가 예상되고, 한·일 FTA의 경우 농산물 수출은 늘고 공산품 피해가 예상

2. 한국상품 차별사례 다발 지역과의 전략적인 FTA 체결추진

- FTA추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한국 상품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사항을

줄이고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멕시코와 같이 관세, 비관세 장벽에서 모두 애로를 겪는 지역이나 미국과 같이 NAFTA, FTAA 등으로 추가 시장확대가 가능한 지역과의 전략적인 FTA 추진 필요
- 또한, 우리와 경합관계가 큰 주요 수출경쟁국의 FTA 체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의 FTA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
- 일본과 경합관계가 큰 자동차, 전자 등 업계에서는 일본의 FTA 체결국가와는 반드시 FTA를 추진할 필요성 제기

3. 한국상품 피해사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FTA 미체결에 따른 피해사례 및 한국 기업의 무역 및 투자진출에 있어 겪게 되는 전반적 차별사례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KOTRA 무역관을 활용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차별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FTA 전략 수립 및 협상에 반영

4. 우리 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가. 범정부적 대책기구 마련

-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차별사례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마련 필요
- KOTRA, 기업, 협회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 및 피해사례 대책마련

나. 현지 KOTRA, 공관 주축의 대책협의회 마련 및 기능활성화

- 현지 KOTRA 무역관과 공관이 주축이 된 대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현지에서 일어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사례를 신속히 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

다.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 범정부적 대책기구, 현지 대책협의회 외에도 구체적으로는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례를 신속히 접수, 대응체계 구축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